

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서

※ 처리기간 : 즉시

※ 신청번호	- -	※ 신청일시	20 . . . :
① 상 호			
② 사업자등록번호			
③ 법인등록번호			
④ 설립일		⑤ 전화번호	()
⑥ 대표자	성명 : 주민등록번호 :		
⑦ 본·지사구분	(1.단일업체 2.본사 3.지사)		
⑧ 주소	(우편번호 : -)		
⑨ E-mail 주소			
⑩ 업 태			
⑪ 종 목		⑫ 관할지세관 부호	
본 사 내 역			
⑬ 통관고유부호			
⑭ 사업자등록번호			
⑮ 법인등록번호			
⑯ 대표자	성명 : 주민등록번호 :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자(관세사)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세관장 귀하</p>			

* 부호등록(변경) 신청은 서울세관(심사총괄과, 전화 02-3438-1255/7, FAX 02-3438-1279)으로 하시기
바라며, ※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.(관세사 대리 신청 가능)

☞ 부호등록(변경)사항 조회 방법 : 인터넷(kcis.ktnet.co.kr) 접속 → 통관및화물정보
→ 각종신고서작성정보 → 통관고유부호 선택 조회

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서 작성요령

일반 사항

○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(예)

갑을병정	<u>1</u>	<u>98</u>	<u>1</u>	<u>01</u>	<u>7</u>
상호	업체유형	본사 설립년도	동일업체 구분	본지사	오류검증 부호

※ 업체유형 : 1(영리법인), 2(비영리법인), 3(국가기관),

4(외국법인), 5(개인과세사업자), 6(개인면세사업자)

○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자료를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지사는 본사가 등록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음.

○ 정리된 상호(통관고유부호 부여를 위한 정리된 후 상호)는 업체유형을 제외한 한글상호 앞 4자를 사용한다. 단, 업체유형을 제외한 상호가 4자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공간을 “*”으로 채운다.

예) (주)갑을병정 ⇒ 갑을병정
 사회복지법인 꽃동네 ⇒ 꽃동네**
 이천이아울렛 ⇒ 이천이아

① 상호 :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상호를 기재하며,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.

- 한글이 아니거나 숫자나 특수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발음의 상호를 기재한다.

- 상호의 업체유형을 나타내는 약어는 괄호 “()”안에 표기한다.

예) 주식회사 갑을병정 ⇒ (주)갑을병정

② 사업자등록번호 :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(10자리)를 기재한다.

③ 법인등록번호 :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(13자리)를 기재한다.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
※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·법인 유형(번호 앞 4~5 자리) 확인

- 영리법인 : “81”, “85” 또는 “86”
- 비영리법인 : “82”
- 국가기관 : “83”
- 외국법인 : “84”
- 과세사업자(개인) : “1” ~ “79”
- 면세사업자(개인) : “80”, “89” 또는 “90” ~ “99”

④ 설립일 :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을 기재하며,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재한다.

⑤ 전화번호 : 신청업체의 사업장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.

⑥ 대표자 :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.

-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에 의거 기재한다.

단,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처음에 "F"(영문 대문자)를 기재한 후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한다.

·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

·법인사업자 : 대표자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

⑦ 본·지사 구분 : 단일업체인 경우 1, 본사인 경우 2, 지사인 경우 3의 부호를 기재한다.

⑧ 주소(우편번호) :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며,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.

예) C & C	⇒	씨엔씨 또는 씨엔드씨
LG전자	⇒	엘지전자
2002아울렛	⇒	이천리아울렛
777	⇒	칠칠칠 또는 쓰리세븐

⑨ E-mail 주소 : 신청업체의 공용 E-mail 주소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청업체 수출입업무관련자의 개인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(E-mail주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한함)

※ E-mail주소 기재방법 : 메일ID@신청업체 도메인명

예) 공용수신 주소인 경우 : webmaster@○○.co.kr

수출입담당자 메일ID가 kdhong인 경우 : kdhong@○○.co.kr

⑩ 업태 :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기재한다.

⑪ 종목 :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기재한다.

⑫ 관할지세관 부호 : 관할지 세관 부호는 신청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(출장소)의 부호(3자리)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.

< 본사내역 >

⑬ 통관고유부호 : 본사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.

*⑬란은 신청업체가 개인사업자 또는 본사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

⑭ 사업자등록번호 :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.

⑮ 법인등록번호 :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(사본)을 확인하여 동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다.

⑯ 대표자 : 본사의 대표자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.

※ ⑭ ~ ⑯란은 신청업체가 개인사업자 또는 본사인 경우에는 신청업체 자신의 사항을, 지사인 경우에는 본사의 사항을 입력한다.

※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본사의 지사가 처음 신청할 때에는 본사의 통관 고유부호를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.